

CN539A



CN0351Q1CY



임대계약서

임대인 “씨-넷 조규장” 을 ‘갑’ 이라 하고 임차인 “충전로라리
권혁진” 을(를) ‘을’ 이라 하여 갑·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은 임대계약을 체결한다.

구분	갑	을
사업자(주민등록)번호	221-02-50630	221-82-60191
주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1046-5	회계동 35BL3L
상호	씨-넷	충전로라리
전화번호	033-264-3200	254-4907
대표자	조 규 장	(인) <u>충전로라리</u> <u>권혁진</u> (인)
계약일자		2010년 3월 24일 2010년 3월 29일

제 1조 임대 계약의 정의

물품임대계약이란 임대인 “갑” 은 임차인 “을” 이 임대한 제품에 대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및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을 하는 것이며, “을” 은 이에 대해 소정의 임대료를 갑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제 2조 대상물품

1. HP Officejet Pro 8500 복합기

(잉크 구매조건 임대, 최초 사용시 잉크 무상제공)

제 3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2. 1년 이후 소유권은 '을' 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한다.

(소유권 이전후에도 잉크는 5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것으로 한다)

제 4조 임대료

1. 제품 1개월 임대료(소모품 지원비용 별도)는 30,000원(VAT 포함)으로 한다.

2. 잉크 추가 구매비용은 검정 20,000원 / 컬러 15,000원으로 한다.

3. 계약시 1년치 임대료 360,000원(vat 포함)은 선결제한다.

4. 폐잉크는 반드시 반납하는것으로 한다.

제 5조

임대료의 지불

1. 1년치 임대료는 선결제한다

제 6조

유지보수

1. 갑은 을에게 제품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임대기간동안 유지보수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단, 소프트웨어 지원 및 근무시간 외 지원은 소정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을”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문제 발생시에는 소정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 7조

소유권 및 선관의무

1. “을”은 물품 및 부가옵션등이 “갑”의 소유임을 표시한 표식등을 훼손함은 물론, 물품의 원형을 변형하는 행위와 “을”임의의 매각,양도,대여,유용,질권의 설정,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을”은 압류,가압류,공조,공과의 체납,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권리 주체에게 소유권이 “갑”에게 있음을 주장하도록 하며, 이와 동시에 그 사실을 “갑”에게 통보하고 “갑”의 조처에 따라야 한다.

제 8조

계약해지

1.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예정일 1개월 전에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약정기간이전에 계약해지시에는 “갑”과 “을”은 서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갑”은 본 계약조항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을”에게 배상하여야 하고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대상물품에 손해(파손 또는 분실)가 발행할 때에는 “갑”에게 제품가액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 9조

기타

1. 본 계약에 이이가 있을때에는 “갑” “을” 쌍방의 합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2. 본 계약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3. 위 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사 업 자 등 록 증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 221-82-60197

법인명(단체명) : 춘천로타리클럽

대 표 자 : 최승필

개업년월일 : 2003년 01월 01일 법인등록번호 :

사업장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35블럭3롯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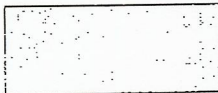
본점소재지 :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35블럭3롯데

사업의종류 : ☒업태 부동산 ☒종목 임대

교부사유 :

2009 년 11 월 20 일

춘천 세무서장



국세청

